

제2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0. 3. 12.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61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2. 28(금)
- 라. 회부일자 : 2020. 3. 2(월)

## 2.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두 차례 연임 규정을 두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나. 위원회 운영원칙 중 운영세칙 마련 근거 규정 추가(안 제12조)
  - 위원회 세부운영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 근거 규정 마련

## 4. 관계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39조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5. 검토의견

### 가.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나. 주요 개정 내용

- 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9조)

표1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며</u>, 연임 할 수 있다.</li><li>○ 구청장이 <u>위촉</u></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며</u>, <u>두 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li><li>○ 구청장이 <u>성별을 고려하여 위촉</u></li></ul>

- 위원의 연임제한이 없는 점을 개선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23개 서울시 자치구 모두 1회에서 2회로 연임제한을 두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 자치구별 임기와 연임 현황

구 분	2년 연임가능	2년, 1회 연임	1년 연임가능	1년 2회 연임	1년 1회 연임	규정 없음
25개	1(금천구)	20(강남구 등)	1(용산구)	1(서대문구)	1(성북구)	1(중구)

○ 위원회 운영원칙 중 운영세칙 마련 근거 규정 추가(안 제12조)

표2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제12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 ----- -----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위원회 세부운영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 근거 규정 마련함.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를 비롯한 20개 자치구가 임기 2년에

연임 1회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구도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법령 제1부.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4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